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통 보

제 목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시스템 운영 부적정

기 관 명 광주광역시, 동구, 서구, 남구, 북구, 광산구

내 용

「숲가꾸기 설계·관리 및 사업시행 지침」(산림청 훈령)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숲가꾸기 작업원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, 같은 지침 제20조제5항에 따라 숲가꾸기사업 감독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숲가꾸기 작업원 운영계획에 따라 사업 착수 및 작업원 교체시에 현장대리인, 작업원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확인하여 타지역 사업장과의 이중등록 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.

그러나 숲가꾸기 작업원 운영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문서에 의존함에 따라 타 지역의 작업원 투입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여건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작업원이 동일기간 내 다른 작업장에 중복 투입되는 등 작업인력의 이중 등록 사례('12년 감사원 감사)가 발생하였다.

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는 작업원의 이중 투입 등 허위 등록 사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을 2014. 8월 한 달 동안 강원도(18개 시·군), 전라남도(22개 시·군)를 대상으로 시

범 운영하여 오류사항 등을 점검하고 2014. 9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(○○○○과-0000호, 2014. 0. 0.)하였다.

그리고 2015년부터 추진하는 모든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숲가꾸기 중복 투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 입력을 철저히 하도록 협조 요청¹⁾ 및 두 차례에 걸쳐 작업원 시스템 입력 철저 및 담당자 인사이동시 시스템 권한 변경 등을 요청하였으며, 2016. 8. 31. 기준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 입력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시·도에 통보(○○○○과-0000호, 2016. 0.00.) 하면서 ① 군·구 등 일선기관 입력 누락여부 모니터링 및 점검 의무화(월 1회), ② 작업원 입력시 이중등록 참여자로 확인될 경우 작업원 교체 요구 등 엄정 조치, ③ 착수계 접수와 동시에 시스템내 작업원내역이 입력 될 수 있도록 담당자 지도, ④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인력을 활용하여 숲가꾸기 관련 각종 시스템 입력 현행화, ⑤ 담당자 인사이동시 시스템 회원가입 후 권한승인 조치 등을 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.

또한 「숲가꾸기 설계·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」(산림청 훈령) 제20조제5항을 일부개정(2015. 2. 27.) 하여 숲가꾸기사업 감독자는 사업 착수 전 및 작업원 교체 시에 현장대리인, 작업원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타지역 사업장과의 이중등록 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하도록 하였다.

그런데 광주광역시 2015~2017. 9월까지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총 사업건수가 35건인데 입력실적이 15건으로 43%에 불과하며,

1) ○○○○과-000호(2015. 0.00.), ○○○○과-0000(2016. 0. 0.), ○○○○과-0000호(2016. 0.00.)

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15건의 경우도 아래 표와 같이 1건(총 사업건수 대비 3%)만 정상입력 되었고 나머지 14건의 경우는 사업 기간 중(5건) 또는 사업 완료 후(9건) 입력하는 등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어, 숲가꾸기 작업원이 동일기간 내 다른 작업장에 중복 투입되는 등 작업인력의 이중 등록 사례가 발생하여도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타 시·도 및 지방산림청에서도 확인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.

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동구청장, 서구청장, 남구청장, 북구청장, 광산
구청장은

[통보] 숲가꾸기사업을 실행할 경우 현장대리인·작업원 명단 등을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시스템에 철저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